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1 발의연월일: 2024. 6. 7

발 의 자:이재정·김한규·민병덕

서영석 · 강준현 · 백혜련

박희승 · 노종면 · 박주민

강경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 법무 부장관은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 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.

현재 전국 각지의 교도소 중 일부의 경우 노후화로 인하여 수용자의 처우가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교정시설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교도소이전 및 신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(안 제5조의2제2항).

법률 제 호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교정시설의 신설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5조의2(기본계획의 수립) ①	제5조의2(기본계획의 수립) ①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②		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		
	–.	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<u>10. 교정시설의 신설 및 이전</u>		
	등에 관한 사항		
<u>10.</u> (생 략)	<u>11.</u> (현행 제10호와 같음)	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		